

한국의 석면공해

(마지막회)

안 종 주

(서울신문사 기자)

차례

1. 한국의 석면 희생자
2. 석면업체와 종사자 수도 모른다.
3. 환경행정과 석면공해
4. 늘고있는 석면수입량
5. 마스크와 석면공해
6. 한국의 석면공해연구
7. 석면산업체와 석면오염 규제
8. 석면에 관한 관심은 지나칠수록 좋다

4. 늘고 있는 석면수입량

석면이 지닌 엄청난 위험성이 일반에게 널리 알려지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석면소비량을 크게 줄이는 한편 대체재를 개발 사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73년 80만 톤의 석면을 소비하던 것에서 1985년 24만 톤으로 격감했다.

반면 한국의 석면수입량은 최근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공부의 통계에 따르면 1982년 4만 4천 톤, 1983년 6만 톤, 1984년 5만 9천 톤, 1985년 5만 7천 톤, 1986년 6만 8천 톤의 석면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석면은 주로 캐나다 퀘백산 크리스탈일(白石綿)이 대부분이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아모사이트(靑石綿)를 일부 수입하고 있다.

우리나라 석면기업들은 국내에서 만든 제품을 일부는 수출하고 나머지는 국내수요로 충당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석면기업들이 공해산업으로 낙인찍히자 석면소비량을 대체재로 크게 감소시키는 한편 외국에서 만들어진 완제품을 수입해 사용하는 정책을 펴으로써 자국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들의 이같은 정책이 계속되는한 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의 석면수입량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5. 마스크와 석면공해

우리나라가 석면공해에 대해 「강건너 불」처럼 여기고 있고 국민들이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스크의 침묵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정부와 석면관계 전문가들이 자신의 일을 게을리하고 있더라도 마스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만 하면 일은 제대로 풀릴 것이다. 그러나 석면에 마스크 즉 언론관계 종사자들 또한 무지한 것이다. 언론의 침묵은 석면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석면관계 질환은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처럼 전염되는 성질이 아니며 오랜기간이 지나야 발병하기 때문에 그 위해성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70년대 전국 주요 일간지에 실린 석면관계 위험성 기사는 필

자의 노력 부족인지는 몰라도 한 건도 없었다. '80년대 들어와서도 이런 현상은 마찬가지이며 '86년에서야 겨우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86년 1월 29일자 경향신문은 「단열·절연재-석면 폐암위험」 「유독성물질...규제·관리시급, 미국선 한 해 만여 명 사망추정 일부제품 사용금지」란 컷과 제목으로 석면의 유해성을 알리고 있다. 각종 전문지를 비롯, 국내 일간지, 방송에서도 석면관련 보도는 몇몇 되지 않기 때문에 보도내용 전문을 실어본다.

폐암을 일으키는 석면사용의 위험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석면은 열에 잘 견디고 단열성과 전기절연성 등이 높아 건축용 자재와 단열재·방열복·전기절연재 등으로 널리 쓰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사용사업장 외에는 규제가 되어 있지 않은 사각유해물질이다.

석면은 작은 분진이 폐에 들어가면 폐에 섬유화현상이 일어나는 석면폐를 유발하고 폐암까지 일으킨다는 사실은 오래 전에 밝혀졌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석면을 유해물질로 규정, 관리해오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최근에 일부 석면제품의 사용 금지를 결정하기까지 이르렀다.

미 환경보호청은 지난 23일 해마다 3천 4백 명에서 1만 2천 명 정도가 석면분진에 노출돼 폐암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 석면시멘트, 석면타일, 석면슬레이

트 등 건축용 자재와 방열복, 로프 등 일반인에게까지 노출돼 있는 석면제품 5가지의 사용금지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석면은 석면슬레이트, 타일, 석고보드, 온수파이프 라이닝 등 건축자재와 장갑, 방열복(소방피복)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등 광범위하게 쓰여 일반인에게도 석면의 위험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조사에 의하면 석면이 들어간 건축자재를 쓴 주택의 경우 석면가루가 대기를 오염, 폐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인됐다.

석면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해 취급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것 등에 그치고 있을뿐 「특정유해물질」로 규정조치 되어 있지 않아 관리와 사용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석면에 대한 노출위험이 가장 큰 제품의 제조작업장의 경우도 방진시설, 근무시간 조정, 건강진단 등 작업환경은 엉망인 것이 대부분이다.

연세대 의대 <산업보건연구소> 문영한 교수는 현지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의 업체가 국소집진기, 습성공정에 의한 부유분진예방 등 방진시설을 갖추지 않아 분진의 허용기준(cm^3 당 5μ 크기의 섬유 2개)을 초과하고 있다며 “중업원들은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부족 때문인지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건강체크 마저 기피할 정도”라고 전했다.

또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이

나 건축공사장에서 나오는 분진에 의한 대기오염 여부도 전혀 조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권숙표 박사는 “석면폐암은 석면에 노출된지 상당기간이 지난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당장 이런 증상이 발견되지 않는다 해서 관심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면서 “환경청 등 관계당국은 적어도 석면을 유해독성물질로 규정, 공해조사는 물론 사용과 관리를 규제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1987년 4월23일자 서울신문도 「무방비, 석면공해」란 컷과 「강력한 발암물질...규제없이 남용」 「장기접촉엔 폐암발생을 정상인 14배」 등의 제목을 달고 석면의 유해성과 관련한 기사를 다루고 있다. 이 보도내용도 그대로 옮겨본다.

석면이 한국인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 미국 등에서는 '70년대 초반부터 엄격하게 사용규제되고 있는 강력한 발암물질인 석면을 국내에서는 아무런 규제 없이 마구 사용하고 있어 건축관계 노동자는 물론이고 전국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22일 환경청·노동부 등 정부 관련부처와 환경보건전문가들에 따르면 석면폐증, 폐암, 중피종 등 불치병에 가까운 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석면이 아무런 규제없이 대량 사용되고 있어 심각한 환경질환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석면은 내화성·내산성·내알칼리성 등이 뛰어난 단열재, 내화재등 건축자재뿐만 아니라 실

험실기자재, 자동차 등 산업 전반에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석면이 인체에 무서운 암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엄격하게 사용을 규제하는 한편 석면이 들어간 건축물에서 석면을 제거하는 대규모 사업을 벌이고 있다. 미 환경청(EPA)은 73년부터 1%이상의 석면을 포함한 물질은 건물화재방지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 사실상 석면을 건축물에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시켰다.

외국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석면에 20년간 폭로된 사람은 정상인보다 14배나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공해의 심각성이 계속 드러나자 유엔환경기구도 석면을 DDT와 함께 세계가 당면한 12대 주요 환경문제라고 지적하고 세계 각국에 석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같은 선진국들의 석면공해 대책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건물을 헐거나 새로 지을 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무방비상태에서 마구 석면을 다루고 있어 수만~수십만 건축관계 노동자들이 고농도의 석면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석면은 오래 전부터 「조용한 시한폭탄」이란 별명으로 불리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몇몇 관계전문가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그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지내고 있다. 〈서울대보건대학원〉 백남원 교수(산업보건)는 「최근 환경청·노동부 등 행정부처 관계담당관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만 너무나 엄청나고 놀라운 문제들이 숨겨져 있어 쉽사리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백 교수는 「빠른시일 내에 석면규제 조치를 내려야 하며 석면이 사용된 기존 건물들을 모두 조사하고 이들 건물을 헐 때 석면이 대기중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외국처럼 작업장내 허용농도는 0.2~2개/cm로 규제기준을 정해 놓았으나 석면농도 조사 등의 기술적인 어려움 등으로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8군도 최근 석면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올해부터 본국에서 전문가를 초청, 수십 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한국에 있는 미8군 건물들을 조사한 뒤 건물에 있는 석면을 제거키로 했다.

환경청 김형철 대기보전국장은 「석면은 저농도라도 장기간 접촉할 경우 건강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석면공해대책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 대기중 석면농도와 석면제품 생산업체 주변지역부터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면공해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지만 한국일보 1987년 6월 3일자 “「현대인의 직업병」이란 시리즈 중에서 석면관련 직업병에 대해 언급, ‘석면에 대한 직업적 노출이 폐암과 늑막염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아주 유명한 케이스,〈연세대 암센터〉김병수 원장은 석면같은 발암물질에 노

출돼 있으면서 담배를 피우면 폐암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경고한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국내 마스크들이 석면공해문제를 다룬것은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이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과학전문잡지 「과학동아」는 1987년 7월호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석면공해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최근 들어 신문에 그나마 이런 정도로 보도됐는데 만족할 수밖에 없다. 마스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었다면 석면에 대한 환경청이나 노동부, 건설부 등 정부관련부처에서 대책을 세웠을 것이 분명하고 석면기업체들도 석면분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조건들을 크게 개선시켰을 것이다. 노동자들이 알게 모르게 죽어가고 있고 국민들의 건강이 좀먹어가는 현실에 대한 책임중 상당부분은 마스크에 돌아가야 한다. 보다 푸르고 맑은 환경을 되찾기 위해서는 환경문제에 접근하는 언론들의 자세가 바뀌어야 하며 철저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6. 한국의 석면공해연구

한국에서는 그동안 석면공해와 이로 인한 노동자 등에 대한 건강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동부는 1984년 석면직물제조업체와 석면슬레이트업체 등 8군대를 대상으로 석면분진농도 및 노동조건에 관한 간이조사를 실시, 자체 개선지침을 시달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거은 예비조사 성격이었으며 조사라

고 부를만한 성질은 아니었다.

노동부는 올 5~7월 10개 석면 업체에 대해 작업조건, 석면분진 농도뿐 아니라 노동자들에 대한 객담검사, X선검사 등 건강조사 까지 실시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조사로는 최대규모이며 본격조사로 볼 수 있다. 이 조사에 참가하고 있는 연구기관은(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남원교수팀(석면분진농도담당), (가톨릭의대 산업의학연구소) 윤임중 교수팀(노동자 건강조사), 노동부 산하(노동과학연구소)등이다. 이번 조사연구 결과가 나올려면 몇 달이 더 지나야 한다.

그러나 조사에 참가한 학자들의 이야기는 막연하나마 한국 석면관련 제조업체내에서의 석면 오염실태를 엿볼 수 있다.

「몇몇 공장은 나름대로 석면 분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흔적이 보였다. 경영주도 석면이 노동자들의 건강에 매우 좋지 않은 물질이며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어떤 사무실은 경영주나 노동자나 모두 무지한 채로 지내고 있었다. 그들의 무지는 공장과 노동자기속사가 함께 연결되어 있으며, 살림집도 공장과 붙어있다는 데서 실감할 수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제하고 있는 석면농도 분진은 노동자가 하루8시간, 1주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루 종일 석면 분진을 들이마시고있는 실정이다.

경영주가 석면의 위험성을 모르고 있으니 산업안전보건법상 마련돼 있는 종업원의 정기건강

진단(1년에 1번)이나 유해성교육은 있을 리 없다. 석면의 위험성을 잘 아는 경영주가 있다 하더라도 종업원에게 올바르게 교육을 시킬 사람은 1명도 없다. 석면의 위험성을 강조해서 알리는 그 다음날 대부분의 노동자가 회사를 그만두거나 다른 직종으로 옮길 테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석면관련업체를 지도감독하는 행정관계자 및 기술관계자들 중 상당 수가 한국에는 아직 별로 석면공해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지만 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니 한번 조사를 해본다는 식의 사고를 하고 있다. 따라서 「저농도로 노출되어도 중피종 등에 걸릴 위험이 있다」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성이 있지만 유병률은 낮다」등으로 부정적인 모습을 부각시키지 않으려는 인상을 질게 풍긴다.

연세의대 문영환 교수(산업의학)는 1979년 9월 국내에서는 석면과 관련한 최초의 논문으로 여겨지는 “석면광산노동자와 지역주민에 대한 석면폐의 유병실태에 관한 연구”결과를 학계에 보고했다.

(중앙의학 vol.37, No3 9월 1979)

문 교수는 충남 광천에 있는 연산 1천 톤 규모의 크리스타일(백석면) 광석을 채굴하는 광산에서 근무하는 광부와 부속분진쇄정제공장에 근무하는 노동자 등 41명을 대상으로 작업장 내에서의 석면분진농도와 석면폐 진단을 실시했다. 문 교수는 이 조사 결과 폐결핵환자가 3명, 석면폐증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 흉막

비후를 보이는 노동자가 1명 발견됐으며 나머지는 모두 정상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교수는 만성적인 병변을 가져오는 석면폐에 있어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에 특기할만한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석면이 지닌 발암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계속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석면광산 갱내의 석면분진(5μ 이상) 농도는 습도 91% 하에서 0.092~0.38개/cm³로 비교적 낮았으나 부속공장은 분쇄공정부서에서 2.67~5.97개/cm³이고 사무실에서 2개 떨어진 곳이 3.88개/cm³로 나타날 정도로 심하게 오염돼 있다고 밝혔다.

한국산 석면은 화학적 성분이 $Mg_3[Si_2O_3](OH)_4$ 로서 SiO_2 가 42.12%, Al_2O_3 가 1.31%, Fe_2O_3 가 1.31% 그리고 MgO 가 40.0% 함유돼 있는 광택있는 백색섬유이지만 질이 나빠 용도가 다양하지 못했다.

충남지역에는 2~3개의 석면광산이 있는데 그중 한 곳은 트레모라이트(土綿)가 나오고 있다. 이들 광산들은 '80년대초만 모두 폐광되고 지금은 석면을 채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교수가 조사한 석면광부들은 대부분 부근에 거주하는 농민들이었으며 근무연수는 평균 5.7년, 6년 미만이면 전체의 63.4%인 26명이고 그중 3년 미만자가 전체의 34.1% 15명으로 나타났다.

석면분진에 고농도 혹은 저농도라도 장기간 폭로될 경우에는 오랜기간이 지나면 석면폐, 폐암, 중피종 등이 발생한다는 것은 여

러차례 강조했다. 이들 중 언제 누가 석면의 희생자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계속해서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추적조사하면 확실히 희생자가 생길 것이다.

문 교수는 연세의대 예방의학 교실 노재소교수와 함께 1986년 7월 「석면제품 공장근로자의 폐기능장애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중양의학 vol 51, No1 7월 1986)이 논문은 부산지역에 있는 석면취급 사업장 4개소, 그곳의 노동자 63명과 대조군으로 비석면사업장 노동자 20명을 대상으로 84년 4월~7월까지 4개월간 실시한 연구결과였다. 문 교수의 조사대상자 연령은 석면취급자 26.9세, 대조군 27.6세였으며 석면취급자 63명중 남자는 25명, 여자는 38명이었고 대조군은 남자 13명, 여자 7명이었다. 근무년수는 석면취급자가 3.6년, 대조군이 2.8년이였다.

이 조사결과 4개공장 중 제1공장은 석면섭취 개수가 16.82~30.73개/cm³이고 제2공장은 1.94~7.62개/cm³, 제3공장은 8.23~15.49개/cm³, 제4공장은 7.5~9.8개/cm³으로 허용농도(당시 5개/cm³, 현재 2개/cm³)를 최고 15배 이상 웃돌 정도로 석면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고농도의 석면에 폭로되고 있는 노동자는 석면테이프프직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나타났다. 또 석면에 많이 폭로된 사람일수록 설문조사 결과 기침, 호흡곤란, 흉통 등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다.

우리나라의 의학기술 수준은 매우 높다. 또 동맥경화, 암, 성

인병 등 건강에 관한 관심 또한 매우 높다. 그러나 산업장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산업재해는 점차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인명을 앗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의학이나 산업보건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다. 이 때문에 이분야를 연구하는 학자 수도 몇몇 안되며 연구논문 등도 찾아보기 힘들다.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이 지난 1986년에만도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노동부는 집계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1987년 7월 31일자)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큰 문제겠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인명피해는 더욱 큰 문제이다. 1986년에만도 산업재해로 인해 1천6백60명이 사망했고 14만 2천 명이 부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 실제로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나 건강장해는 석면관련 암 또는 석면폐와 같이 우리가 제대로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까지 합치면 더욱 엄청날 것이다.

7. 석면산업체와 석면오염규제

우리나라는 외국과는 달리 석면제품을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석면을 사용해 방직을 하거나 슬레이트 등 석면제품을 만드는 산업장내에서의 석면오염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다.

한국의 석면규제조치는 산업안전법 제18조에 근거하고 있다. 제18조는 보건상의 조치에 관한

조항으로 「사업주는 다음 각호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각호 중 1항을 보면 원재료·가스·증기·분진·산소결핍증 공기·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로 되어 있는데 석면은 이 중 원재료·분진 등에 해당된다고 보겠다.

산업안전법 시행규칙은 제3편 보건기준에서 석면을 특정화학물질 중 제2류물질로 규정, 석면 산업장에서 국소배기장치, 자동경보장치, 긴급차단장치, 흡연금지, 정기적인 작업환경측정, 호흡용 보호구착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적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석면업체가 처벌을 받든지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니까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석면취급사업장 관리지침」을 각 석면사업장에 시달해 실천하도록 유도해놓고 있다.

시행규칙 제415조는 「사업주는 석면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다음 사항을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석면의 종류(명칭)·인체에 미치는 영향·취급상 주의사항·사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은 석면의 공기중(1cm³당) 허용농도를 크리스타일 2개, 아모사이트 0.5개, 크로시도라이트 0.2개 기타 석면2

개로 정해 놓고 있다. 또 매 6개월마다 1회 이상 석면의 작업장 내 공기중 농도를 측정하고 년 1회 이상 석면취급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의 이러한 지침은 선진국에서와 거의 비슷한 석면규제 조치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형식적이지 실제적인 지침은 못되고 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이 지침이 보다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지난 5~7월 석면사업장 내에서의 석면분진오염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노동조건이 심각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업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1985년 제71차 정기총회에서 사업장 내에서의 석면오염이 세계 노동자들의 건강에 큰 위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 더 이상 이를 방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에서 석면오염을 줄이고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석면분진과 관련한 문제를 정식의제로 다루었다. 1986년 제72차 정기총회에서는 석면사업장에 대한 규제를 확정했다. 노동부의 관계담당자는 한국이 아직 정식으로 ILO에 가입돼 있지는 않지만 ILO 방침에 적극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 석면에 관한 관심은 지나칠수록 좋다.

일본에서 발행되는 의학잡지 「의학의 진보」 1987년 7월호는 일본에서 시판되는 「베이비 파우더」 5개 제품 중에서 석면이

혼입된 것과 관련한 논문을 실고 있다. 일본 노동자산업의학종합연구소 신산선언 주임연구관이 발표한 이 논문은 일본에서 판매 중인 외제를 포함한 11개 사 19개 제품 중 5개사 5개제품에서 0.4~4%의 석면이 혼입됐다고 밝혔다.

이 논문은 베이비 파우더의 주성분은 중국과 한국산 천연「탈크」(talc 석면)의 분말이며 석면과 화학성분이나 결정구조가 비슷하다고 밝혔다. 활석과 석면은 모두 단사정계에 속하며 활석의 성분은 $Mg_3(OH)_2Si_4O_{10}$ 이며 석면은 $Mg_6(OH)_8Si_4O_{10}$ 이다.

일본 후생성은 문제가 된 5개 제품은 판매실적이 전체의 10% 미만이며 혼입수준이 저농도였다고 판단해 관련제조업체에게 우선 혼입유무를 자체 점검토록 했다. 그러나 유소아가 대상이므로 베이비 파우더중 석면검사법 등 통일기준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키로 했다.(약사공론 1987년 7월 27일자)

일본에서 벌어진 베이비 파우더내 석면혼입사건은 시각에 따라서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일본에서 문제가 된 파우더의 주성분인 활석이 한국산이라고 하니 한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베이비 파우더도 한번 조사해 봄직하다. 베이비 파우더에 폐암물질이 들어있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인 것이다.

이처럼 우리 주위의 언젠, 어디서 석면오염문제가 터져 나올지 모른다. 자신이 석면광산광부나 석면제품제조업체 노동자가 아

나라고 해서 석면공해를 남의 문제로만 들릴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여러사례를 통해서 깊이 깨달았다.

이제 우리는 눈 앞에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으면서도 무지 때문에 깨닫지 못했던 문제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석면공해 문제가 바로 우리들의 이러한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 무지 때문에 나 자신과 이웃이 죽어가고 있는 것도 큰 죄악이지만 그것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큰 죄악이다.

석면공해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은 우선 조용한 시한폭탄의 뇌관부터 제거하는 것이다. 그 뇌관은 석면제품제조업체의 노동자와 건축관계노동자들의 고농도 석면폭로이다. 그 다음 우리는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적절한 석면규제책을 근거로 해 석면사용을 줄여야 한다. 우선 건축물에 석면을 사용하지 말도록 금지시켜야 한다. 또 아직 값비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석면대체재를 사용하는데 주저해서는 안된다.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고 고귀하다. 그 고귀한 생명 앞에서 경제적이니 효율적이거나와 같은 변명은 설 땅을 잃어야 한다. 경영주나 행정관리자, 정책입안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석면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우리들이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우리들의 자손까지도 더러운 「죽음의 가루」를 마시게 될 것이다. ◼